한국금융의 현황과 과제: 정책현안을 중심으로

2015. 8. 27.

전성인
(홍익대 경제학부)

목 차

- 여건 악화: 저성장
- 관리 체제 노후화: 모피아의 발호
- 시장경쟁 실종: 금융지주회사의 권력화
- 성과 악화: 이윤율 저하
- 백업 체제 취약: 예금보험기금 수용능력 바닥
- 정책 견제 세력의 제한성
- 현안 1: 가계부채 구조조정
- 현안 2: 서민금융진흥원 신설

여건악화: 저성장의 제 측면

-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 퇴조중
  - 총공급 <= 노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
  - 총수요 <= 저물가 관측은 총수요도 퇴조한다는 증거
- 부채는 성장에 의해 저절로 없어지지 않음
  - 부채의 존치에 대한 명시적 정책 필요
- 부채의 탕감은 경기 활성화 정책
  - 실질 부 효과 (real wealth effect)
- 자본은 상대적 잉여
  -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의 함의
-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
  - 실질 이자율 감소

관리체제 노후화: 모피아 발호

- 모피아는 “제2의 하나회”로 변모중
  - 주로 서울대 법대, 서울대 경제과 중심
  - " 경제개발” 이라는 과거의 정책방향 폐기후 새로운 목표를 정립하지 못한 채 표류중
  - 정책 추진력은 국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저히 감소
  - 규제 산업 통제로부터 지대 창출과 향유에 관심
- 최근의 관심은 조직 지배력의 확장인 듯
  - 금융기관 낙하산이 어려워지면서 퇴직후 지대추구의 새 돌파구로 기구 신설을 통한 “일자리 만들기 "
  - 서민금융진흥원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추구
- 해법: 모피아 해체

경쟁실종: 금융지주회사 권력화

-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시장 장악력은 계속 확대
  -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지주회사간 권력 서열의 역전
  - 모피아와 금융지주회사간 회전문 인사 정착
  - 금융지주회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
  - 겸업, 지배구조, 적격성 심사 등의 특례 향유
  - 대표소송 등 시장 통제로부터 자유
- 제2의 “재벌 " 로 성장중
  - 정관계와 부적절한 교류
  - 광고를 통한 언론 지배
- 해법: 대주주 적격성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

성과 악화: 이윤율 저하

- 저성장의 습격
  - 잉여 자본의 공급 증가 및 노동 부족 심화
  - 실질이자율 하락과 이윤율 저하
- 금융회사의 추세적 부실화 가능성 점증
  - 생명보험사 도산 가능성 (역금리)
  - 저축은행의 만성적 부실화
  - 은행업 역시 대출기회 급감으로 NIM 하락 장기화
  - 비교역재 분야에서만 조업하는 금융회사 부실화
  - 고위험 고수익 투자시 평균 위험율 증가
- 해법: 없음 (부실정리 기능 재구축?)

백업체제 취약: 예금보험기금 부실

- 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파산
  - 파산의 외부효과는 이미 타 계정에 파급중
- 생보사 도산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?
  - 3대 거대 생보사의 도산시 계약 이전으로 이를 받아 줄 생보사는 존재하지 않음
  - 보험계약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한 예보의 금융안정 역할은 매우 제한적
- 은행 도산은 이미 예보의 능력을 초월한 상황이므로 예금보험 기능 전반에 대한 회의 대두
- 해법: 어려움 (획기적인 재정 확충??)

정책 견제세력의 제한성

- 시장에 의한 견제 실종
  - 금융소비자에 의한 소송 거의 불가능
  - 독과점화로 시장내 견제 가능한 금융회사 부재
- 학계/연구계는 (거의) 완전히 포섭
  - “불러주는 대로 쓴다“
  - “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“
  - 금발심, 자문위, 금통위, 사외이사, 용역 수주는 떡값
- 국회는 기조적으로 무능
  - 입법의 “물물교환“ 성행중
- 해법: 금융만의 개혁으로는 해결 불가능

가계부채 구조조정 I: 신용대출은 맘껏 탕감

- 신용대출 탕감은 가장 저비용 경기 활성화 정책
  - 거의 언제나 제로썸 게임
- 금융기관은 사전에 이미 채무불이행 대비
  - 신용 평가에 따른 금리 차별
  - 대손충당금, 자기자본 등 완충 자금 예비
  - 그 기회비용은 일반적 이자 마진에 반영
- 신용대출 구조조정의 연쇄적 작동 고리
  - Backward induction
  - 최후의 커튼: 파산 제도 개혁 통한 파산자 권익 신장
  - 부실 징후 단계: 신용 채무자의 협상력 증강
  - 신용 채권자 내부 역학관계: 채무조정의 면책 논거

가계부채 구조조정 II:
ch. 1: 신용대출과 담보대출

- Fallacy of composition
  - 개별적인 최선이 언제나 전체의 최선이 아니다.
- 채권 금융기관의 입장
  -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안전
  - 정밀한 테크닉없이 장사할 수 있는 “붕어빵 "
- 경제 시스템의 입장
  -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위험
  - 금융시장과 담보시장(부동산 시장)의 연계 점증
- 결론: 담보대출 신규 증가 억제
  - 부채 탕감은 신용대출 부터
  - 담보 대출은 섣불리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

Ch 2: 개인회생절차의 정비

- 담보 채권자의 임의 경매권(별제권) 박탈
  - 담보 부채 관리의 핵심은 담보 채무자가 담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채를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
  - 이를 위해 담보 채권자의 임의 경매권 박탈 필요
  - 현재 유독 개인회생절차에서만 별제권 인정중
- 신용 채권자와 절대우선의 원칙(APR)
  - 담보 채권자의 별제권을 박탈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 상환액은 보장해 주어야 함
  - 이 경우 신용 채권자가 변제액 감소로 반발
  - 여전업계, 대부업계, 그들 친구인 금융감독당국이 반발
- 개인회생절차 정비는 backward induction의 출발점

Ch 3: 비 소구성 담보 대출

- Anti-Deficiency Loan
  - 담보채무자가 담보를 포기하면 담보채무도 사라짐
  - 일종의 판매자 담보 대출(PMSI: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)
- 지금 도입은 시기 부적절
  - 담보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인 것은 맞음
  - 지금은 담보채무자가 최대한 채무와 담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
  - 자칫 부동산의 연쇄적 하락이라는 파국 초래 가능성
- Sheila Bair (FDIC), 2008.12.10
  - 경매금지프로그램(Foreclosure Prevention Program)에 동참하는 조건 준수 시에만 Citi 그룹 지원 협박

Ch. 4: 이자상환 대출의 재평가

-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만능이 아니다.
  - 정상적 상황에서는 대체로 담보채무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금융 안정성과도 부합
  - 그러나 위기 인접/도래시 채권자에 유리한 정책 방향
  - 위기시 채무자 도산 가능성 높여 금융 안정성과 배치
- 부동산 시장 연계된 위기 도래시 주담대에 대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근 필요
  - “무조건 만기 연장 +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" 전환
- 부동산 위기 대비하여 특정 은행 국유화도 검토
  - 주택금융공사만으로는 부동산 매물 소화 불가
  - 국책은행이 발권력 등 지원받아 매물 소화 가능토록하는 방안 검토 필요

요약: 가계부채 대책 기본방향

- 부동산 담보대출 신규 증가 억제
  - LTV, DTI 실질적 심사 강화
  - 비 소구성 대출 상품 도입 무기한 연기
- 개인도산절차 정비
  - 회생계획 인가후 별제권 박탈
- 채무자 우호적 채무조정 여건 확립
  - 신복위 대체할 수 있는 채무자 우호적 채무조정 단체
  -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
  -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간 정렬
  -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일치

현안2: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제점

- 서민금융진흥원의 핵심 특징
  - 금융위, 금감원 퇴직자가 점유가능한 기구 증설
  - 공공기관화로 공직자 윤리법의 3년 제척조항 회피
  - 유사사례: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자회사 변칙 신설 목매
- One-Stop Service는 개념 자체가 금융원리와 상충
  - 자금공급과 공적 채무조정은 분리해야
  - 채권 회수 위해 공적 정보 접근하겠다는 발상 자체 위헌적
- 그나마 가능한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지원과 소득 및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것
  - 그러나 이것은 금융감독기구의 독점적 역할일 수 없음
  -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우위 보유

현안2: 서민금융진흥원 처리방향

- 기구 통폐합은 전면 백지화
  - 기구 신설의 가장 간편한 논거가 기구 통폐합
  - 기능 변경 없는 통폐합은 무의미
- 신복위 법제화 반대
  -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단체 신설과 정면 상충
-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복지정책협의회로 개편
  - 서민금융 지원의 핵심 역할을 지자체로 이관
  - 금융감독기구 퇴직관료가 중심이 되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신 시 · 도지사 중심의 협의회 신설
  - 중앙정부의 지원, 지자체간 서민지원 사업 조율
  - 협의회장은 시 · 도지사가 맡고, 사무국 직원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함